

11.23(화) 석간 (인터넷 11.23(화) 09:00) 이후부터



보도자료

- ▶ 2010. 11. 23 배포
- ▶ 총 4쪽

- ▶ 사회적기업과장 마성균
- ▶ 사회적기업과 송유나 사무관

T E L : 6902-8473
E-MAIL : youna@moel.go.kr
F A X : 503-626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알림마당<e-노동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대기업-노조-정부부처 협력으로 만드는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환경부-LG전자(주)-LG전자 노조 MOU 체결 -

- 앞으로 녹색성장 분야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대기업이 발벗고 나선다.
- 이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환경부, LG전자(주), LG전자 노동조합은 11월 23일 8:30~9:30, LG트윈타워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 * 참석: 고용노동부차관(이채필), 환경부차관(문정호), LG전자(주) CRO(김영기), LG전자 노조위원장(박준수)
- 금번 협약은 정부, 대기업, 노조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데 의의가 있고, 특히 정부부처와 대기업이 합동으로 지원하고 노조가 참여하는 첫 사례이다.
- LG전자(주)는 녹색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매년 재정지원 대상 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3년간 총 80여억원의 규모로 진행한다.
 - * 재정지원 공모사업은 '11년도 초에 진행 예정

- 또한 사회적기업가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하여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LG전자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지원한다.
 - 이외에도 LG계열사(협력사)를 대상으로 홍보, 납품계약 유도하여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의 주무부처로서, 금번 협약으로 인큐베이팅되는 사업모델에 대하여 인증지원, 컨설팅 지원 등 사업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 환경부는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분야의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육성에 공동 참여하여 성공모델을 발굴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부-고용부 MOU는 5.10 기 체결
- 고용노동부 이채필 차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고민이 담겨진 금번 협약이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 “새로운 수요가 많은 녹색성장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서 1부

【붙임】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서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LG전자주식회사 및 LG전자노동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3년까지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을 위해 당사자 간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력분야는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경영자 교육, 생산성 컨설팅, 판로개척을 포함한다.

제3조(협력사항) ① 당사자는 상호 협력 하에 아래 각호와 같이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

1. LG전자주식회사는 환경(녹색성장)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연간 20억원 범위 내에서 마련·실시한다.
2. LG전자주식회사는 사회적기업가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LG전자주식회사는 녹색성장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실시한다.
4. LG전자노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운영한다.
5. 환경부는 제1호 재정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 및 지원기관 발굴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 6. 고용노동부는 제1호의 사업자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 7. 고용노동부는 제2호, 제4호의 경영자 교육 및 생산성 향상 컨설팅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제4조(상호협약) 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제3조의 LG전자주식회사의 사회적기업 지원 활동에 대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② 당사자는 협력사항의 진행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제5조(협약서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협약서는 각 당사자가 서명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3년을 그 기간으로 한다.

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시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10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
차 관

환 경 부
차 관

LG전자
주식회사
CRO

LG전자
노동조합
위원장